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산불진화 인력 1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7급에서 8급으로 직급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2020.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부터 제5항 단서까지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임업주사보 “27”을 “14”로 하고, 임업서기 “32”를 “45”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1월 5일”을 “2023년 1월 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임업서기 13명은 2021년 0년 00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0월 00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보 1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7퍼센트</u>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③----- ----- --. ----- -----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의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4와 같으며, 별표 6의4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 7퍼센트-----

-----.

④ -----

-----.

----- 7퍼센트-----

-----.

⑤-----
-----.

----- 7퍼센트-----

임용한다. ⑥ ~ ⑨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통상팀은 <u>2021년 1월 5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3년 1월 5일</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임업주사보			<u>27</u>		<u>14</u>	-13	
		•		•	•		
		•		•	•		
임업서기			<u>32</u>		<u>45</u>	+13	
		•		•	•		
		•		•	•		